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2년 1월 10일
- 회부일자: 2022년 1월 11일

3. 제안이유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탁사무 :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위 치 : 청주시 소재
- 위탁기간 : 계약일부터 2024. 12. 31.
-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 사 업 비 : 382,396천원(국비 305,916^{80%}, 도비 76,480^{20%})*
 -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업계획 근거
 - (인건비) 자립지원 전담인력 1인 36,765천원 × 6명 = 220,590천원
 - (사업비) 보호종료아동 사례관리(주거비, 교육비, 자격취득비 등)
월300천원 × 40명 × 12월 = 144,000천원
 - (운영비) 자립지원 전담인력 사무운영비 등 6명 × 연2,968천원 ≒ 17,806천원
- 시설내역 : 수탁법인이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실 설치 및 인력 채용
 - (시설) 수탁법인이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전용공간 확보
 - (종사자) 자립지원 전문가 6명

○ 위탁사무

- 보호~보호종료 전체단계에서의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보호종료 5년 이내)
- 맞춤형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운영
 - 사후관리계획 수립, 모니터링, 주기적상담, 시설연계 및 자립교육
- 바람개비서포터즈(자조모임) 운영 : 사회적 지지체계구축, 자조역량 강화
-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전담요원 지⁸⁾원 : 상담정보제공 및 슈퍼비전 실시
- 기타 자립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5. 검토의견

가.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내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민간 위탁 운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 의견

8)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 제1항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기관”이라 함)의 운영의 민간위탁과 관련해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본 기관의 민간위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⁹⁾에 따른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고, 제4조의2¹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본 기관의 주요 사무는, 아동의 보호~ 보호종료 전체 단계에서의 맞춤형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 자조역량 강화,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전담요원 슈퍼비전 제공 등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 3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바,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볼 수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기관을 설치·운영 중인 8개 시·도 모두 민간위탁 방식을 도입함.
- 「아동복지법」 제40조¹¹⁾에도 본 기관의 설치·운영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9)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
4.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

10)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11)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기관은 사업 내용의 전문성 요구,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민간위탁방식의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위탁 사무들이 효과적이고 투명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참고

시도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현황('21. 12월)

(단위 : 명, 천원)

구분	운영방식	운영주체	예산액
• 기설치 : 8개 / `22년 설치(예정) : 9개			
서울	민간위탁	서울아동복지협회	451,049
부산	민간위탁	부산아동복지협회	538,734
경기	민간위탁	사회복지법인 에벤에셀	491,810
강원	민간위탁	강원도아동복지협회	410,000
충남	민간위탁	충남아동복지협회	247,760
전남	민간위탁	전남아동복지협회	150,000
경북	민간위탁	경북아동복지협회	70,000
제주	민간위탁	제주아동복지협회	75,000